

#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

의안 번호	30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11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·경제적 활동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과 가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♣ 5년마다 보육계획 수립,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

나.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10조)

♣위원회 명칭: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

♣위원회 기능: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수립,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, 위탁에 관한 사항 등

♣위원회 구성 및 임기: 위원 10명 이내, 임기 2년

- 위원장: 보육업무담당 부서의 장

- 위촉직: 보육전문가,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, 관계공무원,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

- 간 사: 보육업무 담당주사

♣위원회 회의: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

♣위원회 심의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
♣위원회 수당 등: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 지급

다.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25조)

♣명칭: 공립○○어린이집      ♣위탁방법: 공개모집 원칙

♣위탁기간: 5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♣수탁자 선정: 위원회 심의 결정

♣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

- 기능: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·개정, 예산·결산사항 등

- 구성: 위원5명이상 10명이내

· 위원장: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

· 위 원: 시설의 장,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, 지역사회 인사

- 회의: 상·하반기 각1회 이상 개최

♣수탁자의 의무, 고용승계, 위탁의 취소, 위탁금지, 위탁의 제한,  
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 등에 관한 사항

라. 비용의 보조 및 반환에 관한 사항 (안 제26조~제28조)

♣비용의 보조 등

- 보육시설의 설치, 증·개축 및 개·보수, 보육종사자 인건비, 보육시설  
종사자 복지증진비, 교재·교구비,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 
지원 등

♣지도·감독,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보육계획수립 후 추가지원

다. 관계부처 협의 : 해당없음

라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2010.7.16. ~ 8. 5.(20일간) 실시, 제출된 의견 있음  
(입법예고결과 요약서 붙임)

#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육시설의 설치·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·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육”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3. “보육시설”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보육시설 종사자”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 시설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책임)**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매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평창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

**제4조(설치)** 군수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, 사업,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보육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보육전문가
2.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
3. 보호자대표
4. 관계공무원
5.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, 위탁에 관한 사항
2.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
4. 보수교육의 실시·위탁에 관한 사항
5.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, 위탁에 관한 사항
6.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
7.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
8. 도서·벽지·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사항
9.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** ① 위원(위원)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(보궐) 위원(위원)의 임기는 전임(전임)위원(위원) 임기(임기)의 남은(남은) 기간(기간)으로 하고, 공무원(공무원)인(인) 위원(위원)의 임기(임기)는 그 직책(직책)에 재임(재임)하는 기간(기간)으로 한다.

② 군수(군수)는 다음(다음) 각 호(호)에 해당(대응)하는 경우(경우) 위원(위원)을 해촉(해촉)할 수 있다.

1. 위원(위원) 스스로가 해촉(해촉)을 원하는(원하는) 경우(경우)
2. 장기(장기)치료를 요(요)하는 질병(질병), 또는 그 밖(밖)의 사유(사유)로 직무(직무)를 수행(수행)할 수 없(없)게 될 경우(경우)
3. 위원(위원)의 품위(품위)를 손상(손상)하거나 위원(위원)으로서의 직무(직무) 수행(수행)에 부적(부적)당(당)하다고 인정(인정)될 경우(경우)
4. 금고(금고) 이상의 형(형)을 선고(선고)받은 경우(경우)

**제8조(위원회(위원회)의 운영(운영) 등)** ① 위원장(위원장)은 위원회(위원회)를 대표(대표)하며, 위원회(위원회)의 사무(사무)를 총괄(총괄)한다.

② 부위원장(부위원장)은 위원장(위원장)을 보좌(보좌)하며, 위원장(위원장)이 부득(부득)이한 사유(사유)로 그 직무(직무)를 수행(수행)할 수 없(없)을 때(때)에는 그 직무(직무)를 대행(대행)한다.

③ 위원(위원)은 자기(자기)와 직접(직접) 이해(이해)관계(관계)가 있는 안건(안건)의 심의(심의)에는 참여(참여)할 수 없다.

④ 위원회(위원회)의 사무(사무)를 처리(처리)하기 위해 간사(간사) 1명(명)을 두(두)며, 간사(간사)는 보육(보육)업무(업무) 담당(담당)주사(주사)로 한다.

**제9조(회의)** ① 위원회(위원회)의 회의(회의)는 군수(군수) 또는 재적(재적)위원(위원) 3분의 1(1)이상의 회의소집요청(회의소집요청)이 있(있)거나, 위원장(위원장)이 필요(필요)하다고 인정(인정)하는 때(때)에 위원장(위원장)이 소집(소집)한다.

② 위원회(위원회)의 회의(회의)는 재적(재적)위원(위원) 과반(과반)수의 출석(출석)으로 개의(개회)하고, 출석(출석)위원(위원) 과반(과반)수의 찬성(찬성)으로 의결(의결)한다.

③ 위원장(위원장)은 업무(업무)수행(수행)을 위하여 필요(필요)하다고 인정(인정)하는 경우(경우)에는 관계(관계)기관(기관), 단체(단체) 등(등)에 대하여 관련(관련)자료(자료) 또는 의견(의견)제출(제출) 등을 요청(요청)할 수 있다.

**제10조(위원(위원)의 수당(수당) 등)** 위원회(위원회)에 참석(참석)하는 위원(위원)에게는 예산(예산)의 범위(범위)에서 「평창군(평창군) 각종(각종) 위원회(위원회) 구성(구성) 및 운영(운영) 등에 관한(관련) 조례(조례)」 규정(규정)에 따라 수당(수당)·여비(여비) 등 실비(실비)를 지급(지급)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(공무원)인(인) 위원(위원)이 그 소관(소관)업무(업무)와 직접(직접)적으로 관련(관련)되어 출석(출석)하는 경우(경우)에는 그러(그러)하지 아니(아니)하다.

### 제3장 공립(공립)보육(보육)시설(시설)의 설치(설치) 및 운영(운영)

**제11조(보육시설의 설치)**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(이하 “보육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2조(명칭)**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공립보육시설(이하 “어린이집”이라 한다)의 명칭은 “공립00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**제13조(업무)**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
2.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
3.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4. 어린이집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14조(위탁운영)**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직접 시설의 장이 되어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라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
③ 군수는 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수탁자 선정)**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위탁계약)**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며,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재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**제17조(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)** ① 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 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시설의 장
2. 보육교사 대표
3. 보호자 대표
4. 지역사회 인사

②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
2.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3. 건강·영양에 관한 사항
4. 안전에 관한 사항
5.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④ 회의는 매년 상·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되, 시설에서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

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,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.

④ 시설물 등의 반환 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(화재·상해·배상보험 등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⑦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, 부족한 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.

**제19조(고용승계)**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기간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사람은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위탁의 취소)**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
2. 수탁자가 관계 법령, 이 조례 및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
3.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
4.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
5.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의 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.



③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.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.

**제21조(위탁금지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될 수 없다.

1. 법 제16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없는 사람
2.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사람

**제22조(위탁의 제한)** 군수는 수탁자 한명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.

**제23조(자체규정)**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24조(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)** ①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한다. 다만,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, 그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면보고는 임면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면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군수는 시설장을 제외한 그 밖의 종사자가 본인이 희망하고 시설장의 제청이 있을 때에는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.

**제25조(관계법규 준수)**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「근로기준법」, 「국민연금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 기준」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

**제26조(비용의 보조 등)**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1. 보육시설의 설치, 증·개축 및 개·보수비
2. 보육종사자(대체교사 포함) 인건비
3.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비
4.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
5. 교재 · 교구비
6.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
7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
8. 그 밖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,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**제27조(지도·감독)**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·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8조(보조금의 환수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
2.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
3.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
4. 시설운영이 정지·폐쇄 또는 취소된 때

## 제5장 보칙

**제29조(준용규정)**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」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등 그 밖에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3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** 평창군 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**제3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 및 공립어린이집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# 입법예고결과 요약서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치사항
평창군 보육시설연합회 (회장 이부녀)	○ 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- 보육교사 인건비를 제2조5호에 의거 <u>보육종사자</u> 로 변경	○ 반 영 ♂현재 국공립, 법인시설 등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<u>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육종사자(대체교사 포함)인건비</u> 로 수정 반영 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                        &lt;영유아보육법 제2조(정의)&gt;                          5. "보육시설종사자"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<u>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</u>를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</div>
	○ 제26조제1항제6호 관련 - 그 밖의 차량운영비( <u>어린이보호차량 유류비 및 차량기사 인건비, 정부지원시설의 노후 차량교체비</u> )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도지사,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변경	○ 미 반 영 ♂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명기 시 지원범위가 오히려 한정될 수 있으므로 당초 <u>차량운영비를 삭제하여</u> - <u>그 밖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도지사,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수정</u> ♂의견제출 사항은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(동 조례 제3조 제3항) 수립 시 검토하겠음.
	○ 제26조제1항7호 추가 - 평창군 보육시설종사자의 장기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보육을 위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 예) 3년이상-5만원, 5년이상-7만원, 10년이상-10만원	○ 반 영 ♂보육시설종사자의 잦은 이직율을 줄이고, 안정적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아래 항목 추가 -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비 -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♂보육시설종사자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획수립 시 검토하겠음.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영유아보육법

**제12조(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)**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정신질환자
3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7.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**제24조(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)** ① 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

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
## 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### 제24조(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)

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]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3.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4.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5. 보육시설 운영계획서(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)

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25조 (국공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의 취소) 보건복지가족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
2.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4.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
5.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
6.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
7.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8.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
## 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21조(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)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.